

설명자료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안)

2005. 6

환 경 부
농 립 부

목 차

I. 법제정의 배경 및 목적	1
II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계	2
III. 가축분뇨의 발생저감	
1. 지역별 양분공급과 연계한 적정 가축사육두수 제도 도입	3
2.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강화	4
3. 환경친화농장 지정	4
IV. 가축분뇨의 자원화	
1. 가축분뇨의 자원화시설 설치 및 지원	5
2. 퇴비·액비 이용촉진	6
V. 가축분뇨의 정화처리	8
VI. 기타 가축분뇨의 관리	
1. 범목적의 구체화 및 책무규정 신설	9
2.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	9
3. 자원화 및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	9
4. 가축분뇨 관련산업	10
5. 관리강화	10
6. 기타 가축분뇨 관리	11
<붙임>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도	12

I. 법 제정의 배경 및 목적

□ 가축분뇨의 관리강화 필요성

-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·폐수 발생량의 0.6%에 불과하나, 발생오염 부하량은 25.8% 차지
 -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정화처리 위주로 규제하고 있어 퇴비·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정화처리함에 있어서도 처리 및 관리기준이 미흡하여 고농도·난분해성인 가축분뇨가 적정 처리되지 않고 있음
 - 현행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」(이하 “오분법”)은 발생원 및 처리방법 등이 상이한 오수·분뇨와 축산폐수를 통합관리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됨
 - 법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당사자 등의 법 이해 곤란
- ⇒ 현행 “오분법”중 가축분뇨를 오수·분뇨와 분리,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자원화 방안 강구

□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

- 농림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양 부처가 합동으로 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
 - 동 대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을 양 부처 합동으로 추진
 - 농림부·환경부가 가축분뇨의 자원화·처리와 이용에 대한 공동 작업으로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 강화
- ⇒ 동 법의 제정을 통해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고자 함

II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

□ 사전예방대책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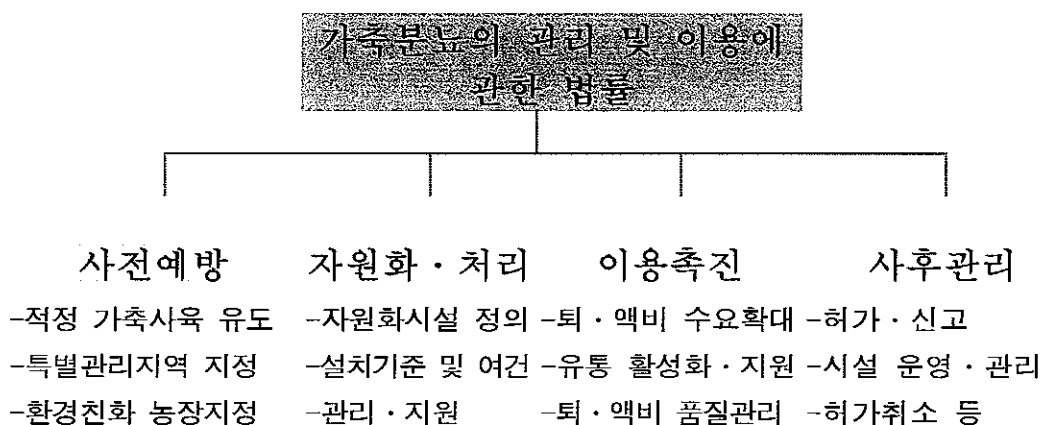
- 지역별 적정 사육두수 유도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·운영,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가축사육단계부터 가축분뇨 발생저감 및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대책 강화

□ 자원화 및 이용촉진

- 발생한 가축분뇨는 우선 퇴비·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, 잔여량은 적정하게 정화처리
- 자원화한 퇴비·액비의 품질관리기준 마련과 유통·이용공급체계를 확립하고, 농업부문과의 연계강화 등을 위한 지원 및 관리강화

□ 관리시스템 강화

-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강화, 공공자원화·처리시설 등 관리·지원
 - 벌칙강화 및 조치명령·허가취소 신설



※ 기존 “오분법”중 축산폐수 관리사항과 「가축분뇨 관리·이용대책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 제정

Ⅲ. 가축분뇨의 발생저감

1. 지역별 양분공급과 연계한 적정 가축사육두수 제도 도입

○ 지자체별 농경지의 양분함유상태에 따른 적정한 가축사육두수 제한을 통해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

- 양분공급 등이 과도한 지역에 대하여는 축사 신규입지 및 재정 지원 제한 등 조치

※ “양분”이라 함은 화학비료 및 가축분뇨(퇴·액비) 중에 포함된 비료 성분으로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에 축적된 질소, 인 등의 원소이며, 과잉시에는 작물의 생육뿐만 아니라 영양염류로 작용하여 하천·호소 등의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

<농경지 양분수요 및 공급 현황, '03년기준>

(단위 : 천톤, %)

'03 기준	양분소요 량 (A)	비료공급량(B)			소요량 대비 공급량 비율(B/A)		
		계	화학비료	가축분뇨	계	화학비료	가축분뇨
질소	441	496	331	165	112.5	75.1	37.4
인산	215	268	128	140	124.6	59.5	65.1

* 양분소요량 대비 가축분뇨(퇴비·액비) 공급량 비율은 질소 37.4%, 인산 65.1%임

【선진국 사례】

- 유럽(EU)의 대다수 국가는 축종별 분뇨내 양분량을 고려하여 확보된 농경지 면적내로 가축사육두수 억제
- 미국은 집약적 가축사육지(CAFOs)에 대하여 수질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영양물질관리계획(CNMPs) 수립, 관리하고 있고, 동 계획은 배출 시설허가제도와 배출지침서 등 2가지 규제제도에 반영하고 있음

2.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강화

○ 지정요건

- 환경유지가 곤란한 상수원 수질환경보전지역
- 주민의 건강·재산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생활환경보전지역
- 농림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밀집지역

※ 기존의 가축사육제한 요건에 ‘가축과밀사육지역’ 추가 지정

○ 지정방법

- 시·군·구의 조례에 따라 지정가능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직권 지정 가능

※ 2003년말 시·군·구의 조례제정은 생활환경보전지역 199, 수질보전지역 56개소이나 주로 동·읍지역 등 도심지역 위주로 지정하고 있음

○ 지정효과

- 축사 신규입지를 제한하거나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특별관리지역의 환경개선 및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

3. 환경친화농장 지정

- 농림부장관은 친환경축사의 운영·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을 통하여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농장으로 지정

- 환경친화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- 친환경축사의 조성 및 가축분뇨의 처리 등 관련 재정지원
-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자원화·처리시설 지도·점검 면제 등

- 환경친화농장의 우수사례를 발굴, 보급·확대

Ⅳ. 가축분뇨의 자원화

1. 가축분뇨의 자원화시설 설치 및 지원

□ 자원화시설 개념

-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를 퇴비 또는 액비,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생산 및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

□ 자원화시설 설치 필요성 및 기준

- 자원화 설치·관리기준의 미흡으로 시설 관리 부실
-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가 영세하므로 부실관리 및 가동중단 등 방치 우려 상존
- 자원화 방식별 규격 및 형태를 표준화하고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부숙도에 따른 저장조 용량 결정 등 설치기준 마련
 - 축분과 뇨의 분리·저장할 수 있는 축사 및 시설 설치 유도

□ 자원화시설 설치지원

-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자원화 설치자금 등 지원(매년 약 480억원)
 - ※ '04년부터 설치비 보조율을 현행 30%에서 50%(지방비 20%)로 상향 조정
 - 축산농가 : 퇴·액비시설과 분리·저장시설 설치지원(약 370억원/년)
 - * 고액분리가 되지 않은 시설 및 가축과밀사육지역 등은 지원제한
 - 경종농가 : 액비저장조 설치 자금 지원(약 30억원/년)
-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자금 우선지원 검토(국고 80%, 지방비 20%)
 - 2004년말 현재 3개소가 설치·운영중에 있으며, 자원화 시범사업 4개소 등 총 7개시설(국고·양여금 144억원)이 설치중에 있음

2. 퇴비·액비 이용촉진

□ 퇴비·액비 등 유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

- 퇴·액비는 살포시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하며, 화학비료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므로 경종농가 등에서 사용기피
- 유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2010년까지 675억원/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는 2005년 하반기부터 중단
 - '04년 210억원 → '07년 540억원 → '10년 이후 675억원/년 지원
- ※ 유기물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화학비료는 연속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토양을 산성화하고 지력을 저하시키며, 빗물 등의 침식을 받아 하천·바다로 유입되어 부영양화 및 적조현상 유발

□ 퇴비·액비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및 적정시비 유도

- 비료성분이 적고 일정치 않아 품질이 떨어짐
 - 질소성분 비교 : 화학비료 21~46%, 축분퇴비 0.3~1.2%
- 퇴비·액비를 농경지 등에 사용시 토양·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퇴비·액비의 품질관리기준 및 세부 사용기준 마련
 - 농협중앙회·지역축협은 퇴비·액비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분분석 실시
- 시비처방서 발급 및 살포기간 설정 등을 통한 적정시비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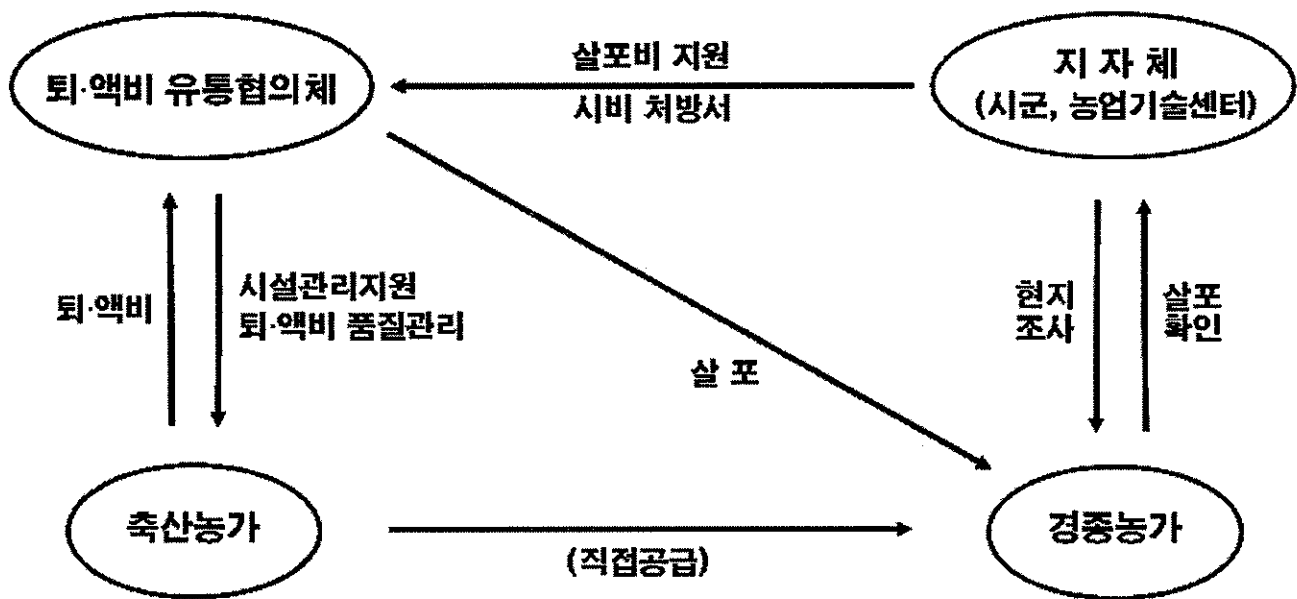
<가축 퇴비·액비 관련 비료공정규격>

구 분	그린(1급)퇴비	퇴비	가축분뇨발효비료(액)	건계분
유기물	40%이상	25이상		20이상
수분	45%이하	50	95	-
질소	유기물대비 40이하	유기물대비 50이하	0.3%이상	
구리	200mg/kg이하	300mg/kg	50mg/kg	300mg/kg
아연	500mg/kg이하	900mg/kg	130mg/kg	900mg/kg
기타	사용가능원료사용	사용가능원료사용	악취강도 2, 염분 0.3%이하	계분 단순건조

□ 수요확대 및 유통활성화 추진

- 가축분뇨 퇴비·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·경종농가 등으로 퇴비·액비 유통협의체를 구성·운영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유통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금지원
 - 유통센터 설치지원(5개소*2억원/년) 및 퇴비·액비의 살포장비 및 살포비용(20원/평) 지원

<지역단위 퇴·액비 유통협의체 운영체계도>



□ 지역단위 통합관리사업 시스템 도입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 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
 -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및 처리시설의 설치와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단계부터 생산된 퇴비·액비를 체계적으로 공급·관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통합관리사업 추진

※ '06년 ~ '09년까지 시범사업 추진후 적정처리 모델 보급(환경부)

V. 가축분뇨의 정화처리

□ 개별농가의 정화처리시설 설치 및 기준

- 고농도인 가축분뇨를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개별농가의 방류수수질 기준이 지나치게 높음
 - 고농도인 분·뇨를 분리·저장할 수 있는 시설 설치의무 부여
 - 설치기준 및 강화한 방류수수질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함
- 개별 축산농가 정화처리시설 지원(보조 30%, 융자 70%)
 - 고액분리시설 및 저장조 지원 확대

□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

- 신고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·운영
 - 가축분뇨의 고농도 유입 및 관리의 전문성 부족으로 처리효율 저조
 - 유입처리 축산농가에게 분·뇨의 분리·저장시설 설치 의무화
 - 5년마다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술진단 실시
- 2004년말 현재 전국에 총 76개 공공처리시설 설치·운영중이며
 - 환경부는 '91년부터 2004년까지 총 4,849억원(국고·양여금 3,558억원)을 투자(국고 80%, 지방비 20%)

□ 방류수수질기준 강화

-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
 - 방류수기준이 BOD 50~1,500mg/L 이하로 지나치게 높고, 일반지역의 질소·인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설정필요
- 공동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신설

Ⅵ. 기타 가축분뇨의 관리

1. 법목적의 구체화 및 책무규정 신설

- 법의 목적에 가축분뇨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념 도입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축산업자 등에게 자원화 등 책무부여
 - 축산업자 등의 친환경 사육환경 조성과 수질오염방지 책무

2.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

-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
- 기본계획에 가축분뇨의 발생, 관리 및 자원화·처리, 이용계획, 양분수요·공급 현황 등 포함

3. 자원화 및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

□ 자원화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내실화

- 종전 “오분법” 중 준공검사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준공검사를 안해도 무방하여 배출시설과 자원화 및 처리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안됨
- 현지조사 후 설치기준에 적합여부 및 오염도검사 등 절차 강화
 - 준공검사 미이행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

□ 자원화 및 처리시설의 관련자재 평가

- 우수 환경관련자재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어 제품선택 애로 및 무분별한 유통을 초래하고, 평가의 확보수단이 미흡
- 환경개선제 및 자원화시설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정보제공을 통해 축산농가의 우수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

4. 가축분뇨 관련 산업

□ 자원화 및 처리시설의 설계·시공

-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시설을 설치·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구비하고 가축분뇨 설계·시공업 등록 필요
 - 방지시설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·환경설비 공사의 업종으로 등록한 자도 설계·시공 가능
- 자원화시설의 경우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의해 축산업자 스스로 설치할 수 있음

□ 재활용업 신고

- 축산업자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시설 및 보관시설을 갖추고 설치기준·관리기준을 준수
 - 다만, 경종농가가 자원화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업 신고 면제

□ 가축분뇨관련 영업

- 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 또는 처리, 시설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허가요건 구비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
 - 영업자는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

5. 관리강화

□ 필요성

- 최근 축산업의 급격한 발전은 사육형태를 전업화, 기업화로 발전,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의 오염원 관리강화 필요성 제기
 - 돼지의 경우 2003년말 1천두이상 전업농가 2.5%(2,998호)가 사육하는 규모는 72.6%(6,742천두) 차지
- 법률제정 당시('91. 3. 8) 규정에 근거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실효성 미흡

□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강화

- 무허가 업자로서 공공수역을 오염시킨자 등 고의 또는 악의적인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을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서,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
- 과태료는 배출부과금폐지 등에 따라 500만원이하에서 1,000만원이하로 부과금액 상향 조정

□ 행정처분 강화

- 자원화 및 처리시설이 설치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정 운영으로 오염행위 발생시 개선·조치명령 시행
- 오염행위로 인한 사후관리 강화 및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다른 환경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허가취소 조항 신설
- ※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·수질환경보전법 제42조·유해화학물질법 제32조·소음진동·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취소, 시설 폐쇄명령 및 6개월간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(영세한 중소기업도 해당)

6. 기타 가축분뇨 관리

□ 배출부과금 제도 폐지

- 허가농가에게 부과·적용하는 배출부과금제도가 당초 부과금 부과 목적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
 - 초과 오염도 및 시설용량 등을 고려하여 차등부과

□ 가축분뇨 관리정책 자문위원회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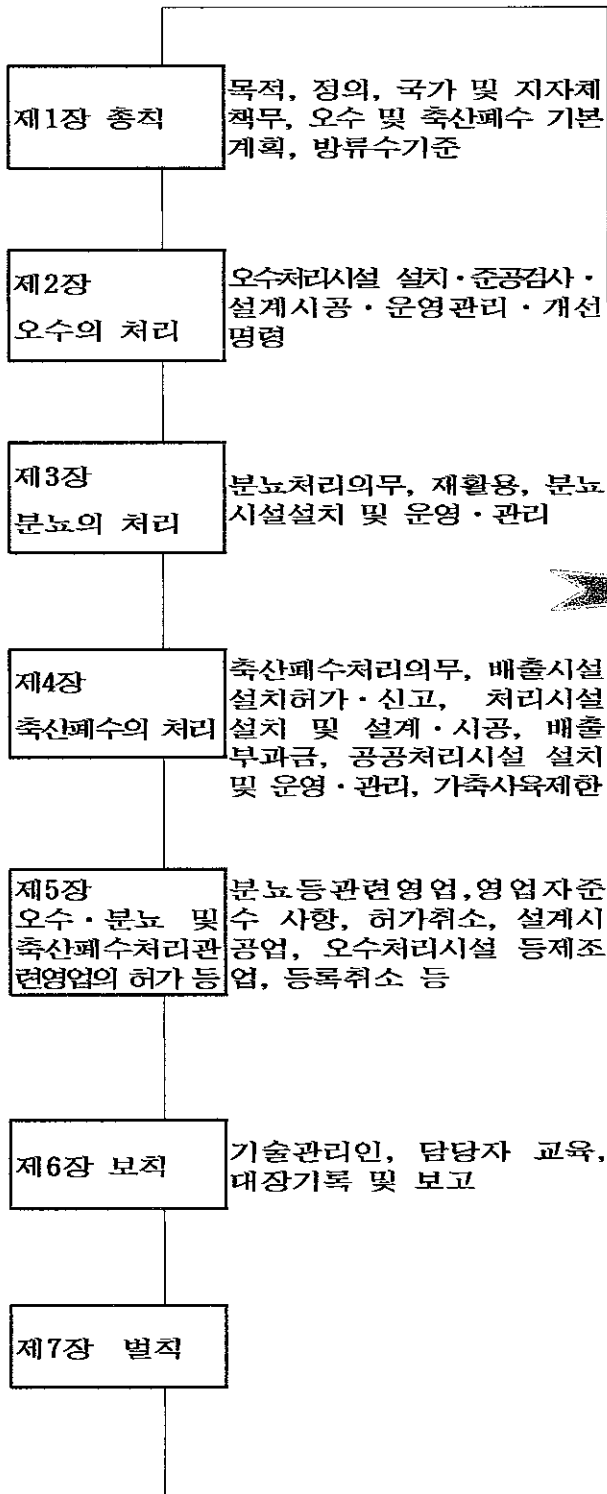
- 가축분뇨관리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등 12인이내의 가축분뇨 관리정책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

□ 임차인 및 임대인간의 책임 명확화

- 배출시설 및 자원화·처리시설을 임대하여 가축 사육과정중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소재 구분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계

〈현 행 법〉



〈제 정 법〉

